

## 2021년 하반기 「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」 공고

충청남도와 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에서는 도내 소상공인 비대면 판로 활성화 지원을 위한 「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1일  
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

### I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: 충남도 소상공인들의 온라인 마케팅 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비대면 판매채널 확보 지원

□ 지원대상: 「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소상공인  
※ (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)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/ (그 밖의 업종) 상시근로자 5인 미만

#### < 지원 제외 대상 >

-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및 사치 향락적 소비·투기 조장 업종[별첨 참조]
-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(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기준)
- 휴·폐업 중인 사업자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사업자
- 상반기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수혜자

□ 지원규모: 100개사(접수 완료 순으로 지원)

□ 지원내용: 2021년 온라인 마케팅 홍보에 소요된 비용(40만원)

※ 2021. 1. 1. ~ 6. 30. 지출한 온라인 마케팅 비용(부가세 제외 40만원이상)에 대해 지원

#### < 온라인 마케팅 지원대상 분야 >

- ① 키워드(네이버, 다음 등 포털사이트 등의 검색 결과 노출) 및 배너광고(막대 형태의 광고)
- ② SNS(페이스북, 인스타그램, 블로그 등) 소셜 마케팅 비용
- ③ 온라인 쇼핑몰(옥션, G마켓, 티몬, 네이버쇼핑 등) 상세페이지 제작, 쇼핑몰 상품 노출 등
- ④ 중개플랫폼(배달의 민족, 요기요, 직방, 다방 등) 광고서비스 이용요금 등
- ⑤ 모바일·반응형 홈페이지 제작(단순 도메인 연장은 지원 불가)
- ⑥ 온라인 홍보기사

※ 지원대상 분야 외 지원 불가

## II 신청 · 접수

□ 신청기간: 2021. 7. 1.(목) ~ 22.(목), 18:00까지

□ 제출서류: 지원금 신청서 등 첨부 서류(아래 참고) 각 1부

### 〈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신청 제출서류 〉

제출서류	비고
①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 지원금 신청서	서식 1
② 개인(기업)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	서식 2
③ 사업자등록증(또는 최근 1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)	
④ 소상공인 확인(매출/고용인원) 서류(공고일 이후 발급분) (매출) 2020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(또는 수입금액증명) (고용인원)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고용인원이 없는 경우)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(고용인원 1명 이상)	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s.or.kr)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(www.4insure.or.kr)
⑤ 온라인 마케팅 증빙서류 - 업체·상품 등의 홍보물이 게재된 페이지 - 모바일 홈페이지/SNS페이지/쇼핑몰 등의 이미지 - 기타 온라인 마케팅 증빙 이미지 등	※ 키워드/쇼핑몰/중개플랫폼의 화면 캡처본 (대표자, 업체명 등이 표기된 마이페이지 필수)
⑥ 지출증빙서류 - 전자세금계산서(영수) 또는 결제영수증(카드영수증, 현금영수증 등)	※ 충전식 비용(네이버 비즈머니 등) 지원 불가하며, 실제 온라인 마케팅을 수행한 비용의 영수계산서
⑦ 본인 명의 통장 사본	
⑧ 만족도 설문조사	서식 3
⑨ 용역업체 이용시 추가제출서류 -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계약서(견적서), 용역업체 입금내역서	※ 용역업체를 이용한 소상공인만 해당

□ 신청방법: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

○ (우편) 3145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, 충청남도경제진흥원  
기업육성팀(401호),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담당자

○ (이메일) [sbizcenter@naver.com](mailto:sbizcenter@naver.com)

※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'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(업체명)' 기재

□ 추진절차



### Ⅲ 유의사항 및 문의처

---

유의사항

○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

○ 우편 또는 이메일 제출 시 문의처를 통해 접수 여부 확인

※ 제출서류 접수 여부 미확인, 신청서 기재사항 오류 및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

○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사업은 업체당 연 1회 지원

○ 접수가 완료된 업체는 개별 안내 문자 발송

문의처: 보부상콜센터 ☎ 041-424-4000

【별첨】

**지원제외 업종(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과 준용)**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희주점업
56212	무도유희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, 게임 아바타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활동이 포함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
표준산업분류	업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87에 해당하는 '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'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 * 단,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가능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제출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※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,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

☞ 산업과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 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

※ 기타: 골프연습장(91136), 스크린골프연습장(91136)은 지원 가능